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의미 확대 >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4047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의미 확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13.
3. 회 부 일 : 2024.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동영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주소만 알고 있다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언제든지 영상물을 시청 가능함.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의 경우에도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인터넷 주소를 통해 공유되고 있음.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의 성 착취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지의 개념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여, 성 착취물 관련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의미 확대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¹⁾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 ④ (생략)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u>소지</u>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 ----- ----- <u>소지(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한다)</u> ----- -----.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행법 제11조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6월 대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²⁾에서 정한 ‘소지’의 의미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인터넷 주소(URL)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이 가능한 링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³⁾함.

이에 개정안은 ‘소지’에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가능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언제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여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하려는 것임.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다만,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어 현행법 제11조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뿐만 아니라 ‘구입’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즉,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하면 위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처벌공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⁴⁾.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불법촬영물의 소지⁵⁾는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만 개정되면 법 적용의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소지’의 개념에만 인터넷 주소 저장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경우 이를 규정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죄⁶⁾에는 인터넷주소 유포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반대해석될 여지가 생긴다는 점⁷⁾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 한편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므로 처벌공백의 문제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 있다고 봄.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개정으로 인터넷주소 구매 처벌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로 처벌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주소 저장 처벌은 시청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주소가 저장된 경우까지 처벌하게 되지 않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7) 제20대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되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5649호)」에 대한 경찰청 의견을 참고함.(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5649호) 검토보고」, 6쪽 참조)